



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·공포 안내

1. 조합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법률 제21784호(2026.06.09.)로 일부 개정·공포된 「근로기준법」의 일부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3. 본 내용은 우리 조합 웹사이트(www.scra.or.kr)「정보마당-법령정보」에서도 확인 가능하며, 개정법률 전문은 법제처 웹사이트(www.moleg.go.kr)에서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○ 근로기준법 개정내용(요약)

NO	구 분	내 용	적용 대상
1.	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향상 [시행일: 2026.12.10.]	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,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함	<u>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</u> (5인 미만 사업장 포함)
2.	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[시행일: 2027.6.10.]	근로자가 일정한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그에 따라 부여하도록 함 (위반시,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)	<u>연차유급휴가 제도 적용 사업장</u> ※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
3.	연차 유급휴가 사용 권장 [시행일: 2027.6.10.]	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 (위반시, 500만원 이하의 벌금)	

○ 개정 전후 내용 비교(요약)

구 분	개정 전	개정 후
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향상	30분 대기 후 퇴근 (법적의무)	신청 시 즉시 퇴근 가능
근로자의 휴식권(연차) 보장	일(日) 단위 원칙 (반차 등은 관행)	시간 단위 분할 사용 법적 근거 마련
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권장	상대적으로 제한적	휴식 방법 및 시기 선택권 강화

“끝”

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이사장



수신자 회원사 211개사

운영 파트	책임 윤기상	기획조정실장 김진석	전무 최재현	이사장 박성호
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-

시행 서자대조 26-903 (2026.06.10.) 접수 - ()
우 06664 서울 서초구 방배로22길 18, 4층 (방배동, 카렌탈비즈니스센터) / www.scra.or.kr
전화 (02) 525-9076 전송 (02) 525-9063/ 이메일 scra@scra.or.kr / 공개